

하도급 CONSULTING 안내

하도급 거래 관련 규제 강화

-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 조사 및 제재 강화(매년 서면 실태 조사 실시)
- 고액의 과징금 부과 및 민·형사상 처벌(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기술유용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하도급 관련 법집행 강화(기술자료 보존 3년→7년으로 변경) / 정액과징금 2배 확대(5억 → 10억)
- 법인과 담당자 동시 처벌(양벌규정)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인한 경영상 위협 요인 상존

구매, 개발 관련 업무 표준화 필요 및 기업내의 하도급 관련 시스템 개선



하도급 CONSULTING 주요 내용

- 하도급 거래분야 업무 Process 점검
- 하도급 내부 구매 관련 제규정 및 지침 점검 및 표준화 제안
-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검토
- 하도급 프로세스 개선 결과 보고서 제출
- 하도급 교육(총 2회), 인터뷰시 개별 교육

☞ 비공개 원칙 및 문서보안 준수

컨설팅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문서보안 절차를 준수

☞ 컨설팅 관련 자료의 취급 원칙

컨설팅 종료시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



컨설팅 절차



점검 인력

하도급분쟁조정 출신 선임 조사관, 외부 로펌과 공동 참여



공정경쟁연합회
FAIR COMPETITION FEDERATION

하도급 CONSULTING 안내



컨설팅 주요 일정(2개월)

일정	내용
1~2주차	▪ 하도급 현황 파악, 점검표 작성 및 교육 1회 실시(2시간)
3~4주차	▪ 하도급 관련 점검표 결과를 근거로 계약 단계별 개선 사항 검토 ▪ 제규정 및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분석 - 제규정 및 절차서, 구매 및 생산 관련 시스템 검토 - 하도급계약서 및 관련 문건 분석
5주차	▪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 점검 (회사 내부 일정에 따라 협의 후 진행)
6~7주차	▪ 분석자료 검증 및 보고서 작성
8주차	▪ 보고서 납품 및 최종 결과 발표(PT)



준비사항

- 하도급 거래 점검표 작성(인터뷰 담당자)
-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서, 하도급 관련 내부 규정
(계약규정, 품질관리규정, 검사 규정, 반품 규정, 대금 지급 규정 등)
- 회의실 등 인터뷰 및 교육을 위한 장소(2~3인 정도)



컨설팅 비용

회사의 매출액을 기초로 협의 후 결정(VAT 별도, 회원사 10% 할인)



컨설팅 실적

대동공업/주성/SFA/현대위아/KT / 팬택 / 신세계건설 / 세방전지 /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 신흥정밀 / 경동/ 나비엔 / 현대다이모스 / 이노션 / 유한킴벌리 / 풀무원 및 계열사 / 현대엘리베이터 / 삼양사 / 삼양엔텍 / 도루코 / 두산중공업 및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상생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10여개 이상의 협력업체 점검 실시)



하도급 CONSULTING 안내



컨설팅 예시

■ 구매 부문

적용 범위 표준 서면 도입 (4건)

□ 계약서(3건)

서면 미교부, 불완전 교부, 부당 특약

구분	검토	이슈
표준계약서	신규	협정서 부당 특약
금형계약서	변경	불완전 교부, 미교부
구매계약서	변경	공사/일반 계약서 분류

1. 표준계약서

가. 기존 :

- (1) 타입 : '08년 공정위 고시 자동차업종
- (2) 이슈 : **협정서 부당 특약 가능성 유**
- (3) 별점 감경 : 계약서 일부 수정은 감경 불가

나. 검토 :

- (1) 타입 : 공정위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2) 이슈 : 협정서 로펌 검토를 통한 부당 특약 해소
계약서와 협정서 별도 계약체결
- (3) 별점 감경 :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별점(2점) 감경 可**

2. 금형(치구)계약서

서면 불완전 교부, 미교부

- 가. 기존 : 개발 건수, 가격결정 다 → 지연, 미교부 발생
- 나. 검토 : **가격결정 지연 해소(가단가 계약 후 정단가 계약)**
개발 건수 증가 시 서면 발급 수 증가
타사 (금형 개발 외주화 → 하도급 적용 無)

3. 구매계약서

가. 기존 : 단일 계약서 사용

나. 검토 : 시설공사 / 대기업용 / 일반 계약서로 세분화

4. 하도급대금 합의서

부당감액

- 가. 표준 서면 도입 : 적용시점 및 합의자 변경, 간소화
- 나. 프로세스 개정
실무자 합의→본부장 결재→시스템 결재→합의서 보관
- ※ 서면 불완전 교부 해소
- ※ 부당감액 예방 (하이되 견정서 전수)

■ 기타 부문

적용 범위 프로세스 개선 (4건)

1. 표준 기술자료 요구 지침

기술자료 제공요구, 유용 금지

가. 당사 기술자료 접수현황

QC공정도, 작업표준서, 3D 데이터, 매뉴얼 등 → 해당

나. 추진 내용

- (1) 부서별 기술자료 수취 내역 접수
- (2) 기술자료 해당사항 분석
- (3) 기술자료 심사고시 확인(법무 검토) - 검토 중
- (4) 기술자료 지침 내부 고시

※ 기술자료 유용이 4대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 시행 중

2. 목표원가, TCS 운영 기준

부당감액 /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 목표원가 : 목표원가 기준으로 합당한 절차 없이

가격 결정시 부당감액

- 목표원가는 내부 관리 지표로 운영

나. TCS 운영 : 협력업체 조사는 경영정보 요구금지 범위반

- 한국물가정보 데이터 활용

3. 하도급 대금 지급 기준

하도급 대금 지급

가. 대금지급 (제조위탁)

- (1) 중소기업 : 60일 이내 현금화
- (2) 보호대상 중견기업 : 60일 이내 현금화
- (3) 대기업 / 중견기업 : 계약 조건

※ 단, 발주자(공공기관) 현금지급 시 현금 지급

나. 지연이자 수수료 지급

- (1) 지급수수료 변경(기존 7%)
- 당사 약정은행 분기별 평균 차입 이자율로 적용
(현재 4% ~ 4.5% 수준)
- (2) 협력업체 변경내용 안내 필요

다. 납품대금지급 약정서 내용 수정

- 카드결제 방식에 대한 문구 추가



담당 : 배종균 차장(02-310-3326), 차재강 책임(02-310-3304)



공정경쟁연합회
FAIR COMPETITION FEDERATION